

참여자 안내서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름**



목차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 03 |
| I. 한눈에 살펴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05 |
| 1. 국민취업지원제도 | 06 |
| 2. 지원대상 | 07 |
| 3. 지원내용 | 10 |
| 4. 신청 및 접수 방법 | 11 |
| 5. 지원 절차 | 12 |
| 6.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 결과 | 13 |
| 7.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14 |
| II. 참여자가 제공받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 지원 | 15 |
|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6 |
|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 17 |
| 3. 사후관리 지원 | 19 |
| Q&A | 20 |
| 유의사항(개인정보보호) | 28 |
| 취업지원 프로그램 | 29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 **(취업지원)**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법 제2조제1호)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법 제12조 ~제14조)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법 제18조)
-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급하는 비용(법 제16조)
- **(취업성공수당)**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하여 이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법 제17조)
- **(수급자격자)**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법 제2조제2호)
- **(수급자)**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법 제2조제3호)
- **(취업활동계획)** 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법 제12조)
- **(수급자격 신청일)** 법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날(법 제8조)
- **(지정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급주기 중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날(법 제18조)
- **(구직활동)**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부과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①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②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일경험, ③복지 및 금융 지원 연계 등이 있음(법 제13조)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①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②동행면접, ③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지원 등이 있음(법 제14조)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필요시 6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법 제15조)
- **(사후관리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연장기간 포함)이 종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구인정보의 제공 등 관리를 하는 기간으로서, 최대 4개월(3개월+1개월)까지 정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

한눈에 살펴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0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①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②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②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③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④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써 운영

02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 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II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p>I 유형</p>  | <p>II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 | | |
|---------------|--------------------|
| ①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 ⑧ FTA 피해실직자 |
| ② 북한이탈주민 | ⑨ 건설일용근로자 |
| ③ 여성가장 | ⑩ 국가유공자가구원중취업지원대상자 |
| ④ 결혼이민자 | ⑪ 미혼모(부) · 한부모 |
| ⑤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 ⑫ 니트(NEET)족 |
| ⑥ 신용회복지원자 | ⑬ 영세자영업자 |
| ⑦ 위기청소년 |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 ① 생계급여 수급자,
- ②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③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④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I 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I 유형(요건심사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소득)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②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③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④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03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I 유형과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 구분 | | I 유형 | | | II 유형 | | | |
|-------|---------|----------------------------------|---------------------|------------|------------|------|----|-------------|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저소득층 등 | | 청년 | 중장년 |
| |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
| 지원 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 | | | |
| | 소득 | 중위소득 50% ↓ | 중위소득 120% ↓ | 중위소득 50% ↓ | 중위소득 60% ↓ | x | x | 중위소득 100% ↓ |
| | 재산 | 3억원 ↓ | 3억원 ↓ *고시로 규정 가능 | 3억원 ↓ | x | | | |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x | x | x | | |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 | | | | | | |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 | | x | | | |
| | | 취업활동비용 | x | | ○ | | | |

04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①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05

“지원 절차”는?

* 1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06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①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②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

부정수급 유형

①수급자격 부정수급, ②구직활동비용(취업활동 비용지원 포함) 부정수급, ③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제재기준

①(반환명령)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②(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 ③(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④(형사처벌)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07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II.

참여자
가 제공받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 지원

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1-2.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③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1-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 ① 일자리정보 탐색방법
-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③ 면접기술 습득
- ④ 맞춤형 취업알선
- ⑤ 구인·구직 만남의 날
- ⑥ 동행면접
- ⑦ 채용박람회
- ⑧ 채용 대행 등 참여

02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 구직촉진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② 원칙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2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분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을 통해
 -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이 가능하며
 - 2회~6회차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 지정한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시 소득(근로·사업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알려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혹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시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

| 순서 | 일시 | I 유형 참여자 | 고용센터 등 |
|----|------------------------|--|--|
| 1 | '21.1.15. |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워크넷 구직등록) |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 2 | '21.2.15. (~1개월 이내) | • 수급자격자 결정 | • 수급자격 결정 통지 |
| 3 | '21.3.15. (~1개월 이내) | • 상담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1회) | •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지·역량 분석 • 상담 진행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지급 |
| 4 | '21.4.15. '21.8.15. | • 매월 구직활동 의무 이행(2회 이상) •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급(2~6회) | • 고용·복지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제공 • 구직활동 이행(2회 이상) 여부 확인, 지급 |
| 5 | ~'21.11.15. (~3개월) |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수급 • (미취업자) 구직정보 제공 등 | • 사후관리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급 - (미취업자) 구직정보 제공 등 - (부정수급자) 모니터링 조사 |

2-2. 취업성공수당 지원

I 유형(청년제외)과 II 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취약계층

-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및 방법은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②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③ 기타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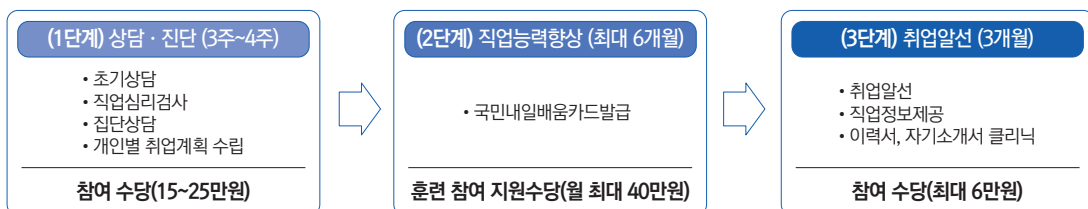
알려드립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급요건은 별도 공지(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2-3. 취업활동비용 지원

II 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265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요건 및 금액



03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의지를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 취업능력이 낮거나 취업장애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제공합니다.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 유지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사후관리는 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의하세요

-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3년의 범위*에서 재참여 기간이 단축되며,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는 5년동안 재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Q&A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육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로 진행됩니다.

4. 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①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I 유형(요건심사형)에 ②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I 유형(선발형)에 ③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II 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유형으로 ①요건심사형, ②선발형 청년층, ③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 가구단위 소득요건 | 가구원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
| ① 요건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 | 3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
| ② 선발형 청년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 | 3억원 ↓ | |
| ③ 선발형 비경향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50% ↓ | 3억원 ↓ | |

6.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7.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인 2,438,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중위소득 50%=2,438,145원, ②중위소득 120%=5,851,448원

9.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②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③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④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0.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I 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3.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4.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15.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6.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1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3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4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5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6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7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17.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18.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19.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 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1.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이용하면 됩니다.



22.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3. I 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24.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25.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 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6.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27.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개인정보보호

- 고용서비스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격 결정 등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지 않습니다.
 - 제3자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 업무를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연번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목적 및 내용 | 시간 |
|----|--------------------------|-------------------|--|-------------|
| 1 | 성취 프로그램 | 18~45세 구직자 | •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 기술 향상 | 24h (4일) |
| 2 | 행복오름프로그램 | 기초생활 수급자 | • 취업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등 | 24h (4일) |
| 3 | (WiC)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여성) | • 취업의욕 제고 •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 이해 | 12h (3일) |
| 4 | (Hi)고졸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 • 취업의욕 제고 •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 12h |
| 5 | (청취력)청년취업 역량프로그램 | 청년구직자 (18~34세) |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 24h (4일) |
| 6 | (allA)청년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 | 취업취약 청년층 | •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 24h (4일) |
| 7 | 행복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 | 경제적 취약계층 | • 자기이해,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 | 24h (4일) |
| 8 | (CAP+)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 청년 (18~34세) |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 24h (4일) |
| 9 | 취업희망프로그램 | 심리적 취약계층 |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 24h (4일) |
| 10 | 성장프로그램 | 중장년층 (50세 이상) | • 취업자신감 제고 • 구직기술 향상 | 24h (4일) |
| 11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 경력단절 여성 | •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 24h (4일) |
| 12 |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제대(예정) 군인 | • 전직준비 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전직계획 수립 | 30h (5일) |
| 13 | 생산직 퇴직지원 |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생산직 관련 퇴직 준비와 인생설계 | 24h (4일) |
| 14 |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사무직 관련 퇴직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 24h (4일) |
| 15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 24h (4일) |
| 16 | 단기취업특강 (8종) | 전체 구직자 |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수집 등 | 각2h |
| 17 | 단기집단상담 (10종) | 전체 구직자 | •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 | 각3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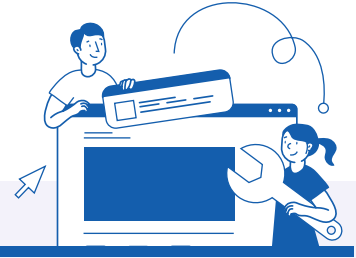
※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등이 상이하므로 프로그램 운영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일정 및 신청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취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 집단상담 · 복지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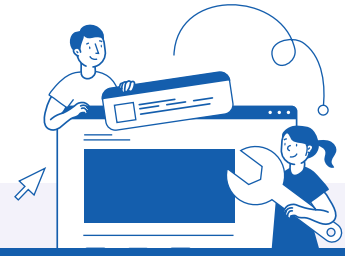
- ❶ **(심리안정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대상자로 선정 · 연계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EAP)
- ❷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용 · 복지 연계 및 협업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직업지도 서비스
- 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 · 창업, 채무조정 등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할 목적 등으로 금융 취약 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❹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총합지원 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한 복지 프로그램
- ❺ **(양육지원 프로그램)** 양육(돌봄 · 육아)지원 등을 통해 취업 걸림돌 제거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원 지원 프로그램(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포함) 참여,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❻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 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지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
- 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특정 직업 또는 일반적인 직업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중앙정부 · 자치단체 · 민간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 ❽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대학 등과 같은 특정기관 등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되어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상담 등 참여하거나 창업관련 법률 · 특허 · 금융 · 경영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
- ❾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외 맞춤형 연수 및 취업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통합 정보망(월드잡플러스), K-Move스쿨, 국내 해외취업센터, 해외 K-Move(코트라 무역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 ❿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취업의 걸림돌 제거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예시

- ❶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계좌제적합훈련 등 포함)
- ❷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❸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 ❹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❺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 ❻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❽ 일학습병행제
- ❾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제적합훈련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과정
- ❿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① 창업진흥원 (www.kised.or.kr)

- (지원내용) 창업도약 · 초기창업 · 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 · 1인창업기업 · 중장년기술창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지역창업자 · 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 ·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창업관련 법률 · 특허 · 금융 · 경영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등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 (지원내용) 전국 18개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운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 기관 · 프로그램의 연계
- 온 · 오프라인 상담, 멘토링 · 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지원,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등의 창업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파트너 기업, 유관기관과 연계 · 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iz.or.kr)

- (지원내용) 창업지원, 경영성장, 재기지원, 정책자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예비 및 초기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맞춤 지원(국번없이 1357)

④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 (지원내용) 창업교육 지원사업, 시설 · 공간 지원사업, 창업자 대상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정책자금 상담, R&D 및 판로 ·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제공(국번없이 1357)

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 (지원내용) 법인 유형별 설립정보 제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등 매뉴얼 제공, 법인 설립 절차 체험 등 법인설립 지원(☎1577-5475)

⑥ 기타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창업지원제도, 대학내 또는 기관 연계 창업보육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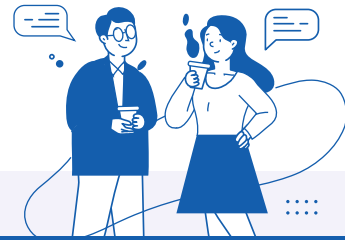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 ① **(체험형)** 취업역량 ·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NGO · 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지원내용)** 참여자 수당 일 2.1만원(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 ②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지원내용)** 참여자 수당 월 182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 **(내용)**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②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 **(내용)**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주거비 등 제공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내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취업지원 프로그램

④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내용)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문의)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또는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⑤ 개인회생 · 파산 종합지원

- (내용) 법률상담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 종합 지원센터(☎132, <https://resu.klac.or.kr>)

⑥ 소상공인 지원(용자)

- (내용) 상시근로자 5명(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⑦ 위기가족 지원

- (내용)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 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⑧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⑨ 아이돌봄서비스

- (내용)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⑩ 의료 지원

- (내용)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등
- (문의) 지자체 산하 의료원, 국립 ·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부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기본 프로그램)** 취업상담 및 알선,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지원,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채용대행으로 수급자에게 적격한 정보제공, 모의 면접 지원, 직무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전문가 현장 인터뷰 프로그램 등
 - 취업의 걸림돌 제거 및 구직활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중앙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써 위에서 열거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구직활동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

채용지원서비스

- 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서비스기관의 시설 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 (현장 채용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② **(채용박람회)** 채용면접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행사(직접 참가기업 30개소 이상)
 - * (온라인 채용행사로 전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온라인 채용박람회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별 전용 채용페이지 운영, 전형 관리시스템 운영, 실시간 화상면접, 온라인 화상 구직자 취업컨설팅 및 기업체 노무컨설팅 등을 제공
- ③ **(동행면접)** 고용서비스기관의 담당자가 일 경험이나 면접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④ **(채용대행)** 근로자 모집·선발에 필요한, 채용심사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접수·심사 등의 절차를 고용서비스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서비스

MEMO

A memo template consisting of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blue border and rounded corners. The interior of the rectangle is filled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memo template consisting of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blue border and rounded corners. The interior of the rectangle is filled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룸



고용노동부